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본 예산안은 2017년 12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I. 제안이유

- 연도 중 보조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동계올림픽 준비사업, 군민중심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II. 주요내용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5,29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4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50백만원이 증액된 470,912백만원, 특별회계는 395백만원이 증액된 44,382백만원 임.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세 2,426백만원, 지방교부세 850백만원, 조정교부금 4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493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16백만원이 감액되었음.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7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94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4,007백만원, 재무활동 18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42백만원은 감액되었음,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394백만원, 재무활동 1백만원 임.

Ⅲ. 예산개요

가. 회계별 예산규모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5,293,760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9%인 4,544,637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일반회계는 470,912,035천원으로 4,149,779천원(0.89%)
- 특별회계는 44,381,725천원으로 394,858천원(0.90%)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 구 | 분 | 3회추경 예산안 | | 기정액 | 비교증감 | |
|----------|-----------------|--------------------|---------------|--------------------|------------------|-------------|
| | | 예산액 | % | | 증감액 | % |
| 합 | 계 | 515,293,760 | 100.00 | 510,749,123 | 4,544,637 | 0.89 |
| 일 | 반 회 계 | 470,912,035 | 91.39 | 466,762,256 | 4,149,779 | 0.89 |
| 특 | 별 회 계 | 44,381,725 | 8.61 | 43,986,867 | 394,858 | 0.90 |
| | 공기업특별회계 | 21,991,697 | 4.27 | 21,957,196 | 34,501 | 0.16 |
|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 21,991,697 | 4.27 | 21,957,196 | 34,501 | 0.16 |
| | 기타특별회계 | 22,390,028 | 4.35 | 22,029,671 | 360,357 | 1.64 |
|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741,162 | 0.14 | 741,162 | 0 | 0.0 |
|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 1,833,000 | 0.36 | 1,173,000 | 660,000 | 56.27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609,134 | 0.12 | 608,415 | 719 | 0.12 |
| |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 963,685 | 0.19 | 963,685 | 0 | 0.0 |
| | 수질개선특별회계 | 17,937,103 | 3.48 | 18,237,465 | △300,362 | △1.65 |
| | 주택사업특별회계 | 305,944 | 0.06 | 305,944 | 0 | 0.0 |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89%인 4,149,779천원이 증액된 470,912,035천원 임.
- 자체수입은 47,804,392천원으로
 - 지방세는 2,426,000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16,000천원이 감액되었음.
- 이전수입은 397,989,532천원으로
 - 지방교부세 850,000천원, 조정교부금 400,000천원
보조금 1,492,62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5,118,11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7,158천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 구 분 | | 3회추경 예산안 | | 기정액 | 비고증감 | |
|------------------|--------|--------------------|---------------|--------------------|------------------|-------------|
| | | 예산액 | % | | 증감액 | % |
| 합 계 | | 470,912,035 | 100.00 | 466,762,256 | 4,149,779 | 0.89 |
| 자 체 수 입 | 소 계 | 47,804,392 | 10.15 | 46,894,392 | 910,000 | 1.94 |
| | 지방세수입 | 30,690,370 | 6.52 | 28,264,370 | 2,426,000 | 8.58 |
| | 세외수입 | 17,114,022 | 3.63 | 18,630,022 | △1,516,000 | △8.14 |
| 이 전 수 입 | 소 계 | 397,989,532 | 84.52 | 395,246,911 | 2,742,621 | 0.69 |
| | 지방교부세 | 234,397,000 | 49.78 | 233,547,000 | 850,000 | 0.36 |
| | 조정교부금등 | 7,160,000 | 1.52 | 6,760,000 | 400,000 | 5.92 |
| | 보조금 | 156,432,532 | 33.22 | 154,939,911 | 1,492,621 | 0.96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25,118,111 | 5.33 | 24,620,953 | 497,158 | 2.02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89%인 4,149,779천원이 증액된 470,912,035천원 임.

○ 정책사업비 4,007,485천원, 재무활동 184,74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42,447천원이 감액 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 구 분 | 3회추경 예산안 | | 기정액 | 비교증감 | |
|---------|-------------|--------|-------------|-----------|-------|
| | 예산액 | % | | 증감액 | % |
| 합 계 | 470,912,035 | 100.00 | 466,762,256 | 4,149,779 | 0.89 |
| 정 책 사 업 | 396,846,442 | 84.27 | 392,838,957 | 4,007,485 | 1.02 |
| 재 무 활 동 | 23,099,206 | 4.91 | 22,914,465 | 184,741 | 0.81 |
| 행정운영경비 | 50,966,387 | 10.82 | 51,008,834 | △42,447 | △0.08 |

○ 기능별 세출예산은

-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예산대비 131,318천원이 증액된 22,038,486천원
- 공공질서및안전은 97,050천원이 증액된 14,025,825천원
- 교육은 17,228천원이 감액된 2,257,038천원
- 문화및관광은 596,902천원이 증액된 77,768,792천원
- 환경보호는 376,851천원이 감액된 30,542,701천원
- 사회복지는 217,991천원이 증액된 55,705,030천원
- 보건은 859,948천원이 증액된 15,792,094천원
- 농림해양수산은 1,510,097천원이 증액된 71,545,114천원
- 산업·중소기업은 83,904천원이 증액된 6,056,519천원
- 수송및교통은 757,540천원이 증액된 25,833,780천원
- 국토및지역개발은 315,245천원이 감액된 93,470,091천원
- 예비비는 646,800천원이 증액된 4,910,178천원
- 기타는 42,447천원이 감액된 50,966,387천원이 편성됨.

《기능별 현황》

(단위:천원)

| 구 분 | 3회추경예산안 | | 기정액 | 비교증감 | |
|---------|-------------|--------|-------------|-----------|-------|
| | 예산액 | % | | 증감액 | % |
| 합 계 | 470,912,035 | 100.00 | 466,762,256 | 4,149,779 | 0.89 |
| 일반공공행정 | 22,038,486 | 4.68 | 21,907,168 | 131,318 | 0.60 |
| 공공질서및안전 | 14,025,825 | 2.98 | 13,928,775 | 97,050 | 0.70 |
| 교육 | 2,257,038 | 0.48 | 2,274,266 | △17,228 | △0.76 |
| 문화및관광 | 77,768,792 | 16.51 | 77,171,890 | 596,902 | 0.77 |
| 환경보호 | 30,542,701 | 6.49 | 30,919,552 | △376,851 | △1.22 |
| 사회복지 | 55,705,030 | 11.83 | 55,487,039 | 217,991 | 0.39 |
| 보건 | 15,792,094 | 3.35 | 14,932,146 | 859,948 | 5.76 |
| 농림해양수산 | 71,545,114 | 15.19 | 70,035,017 | 1,510,097 | 2.16 |
| 산업·중소기업 | 6,056,519 | 1.29 | 5,972,615 | 83,904 | 1.40 |
| 수송및교통 | 25,833,780 | 5.49 | 25,076,240 | 757,540 | 3.02 |
| 국토및지역개발 | 93,470,091 | 19.85 | 93,785,336 | △315,245 | △0.34 |
| 예비비 | 4,910,178 | 1.04 | 4,263,378 | 646,800 | 15.17 |
| 기타 | 50,966,387 | 10.82 | 51,008,834 | △42,447 | △0.08 |

○ 조직별 세출예산은

- 안전건설과 58,444,673천원(12.41%)
- 문화관광과 55,409,269천원(11.77%)
- 자치행정과 53,668,926천원(11.40%)
- 주민생활지원과 51,138,296천원(10.86%) 순으로 편성 되었음.

《조직별 현황》

(단위:천원)

| 구 분 | 3회추경예산안 | | 기정액 | 비교증감 | |
|-------------|-------------|--------|-------------|-----------|-------|
| | 예산액 | % | | 증감액 | % |
| 합 계 | 470,912,035 | 100.00 | 466,762,256 | 4,149,779 | 0.89 |
| 기 획 감 사 실 | 10,586,733 | 2.25 | 9,950,653 | 636,080 | 6.39 |
| 문 화 관 광 과 | 55,409,269 | 11.77 | 55,341,593 | 67,676 | 0.12 |
| 주민생활지원과 | 51,138,296 | 10.86 | 50,881,655 | 256,641 | 0.50 |
| 중 합 민 원 과 | 2,124,510 | 0.45 | 2,155,157 | △30,647 | △1.42 |
| 자 치 행 정 과 | 53,668,926 | 11.40 | 53,544,540 | 124,386 | 0.23 |
| 재 무 과 | 3,898,247 | 0.83 | 3,898,247 | 0 | 0.0 |
| 경 제 체 육 과 | 19,035,597 | 4.04 | 18,931,893 | 103,704 | 0.55 |
| 환 경 위 생 과 | 22,382,846 | 4.75 | 22,674,198 | △291,352 | △1.28 |
| 산 림 과 | 12,359,689 | 2.62 | 12,396,104 | △36,415 | △0.29 |
| 안 전 건 설 과 | 58,444,673 | 12.41 | 57,653,623 | 791,050 | 1.37 |
| 도 시 주 택 과 | 42,237,237 | 8.97 | 42,152,192 | 85,045 | 0.20 |
| 올 림 픽 추 진 단 | 4,831,394 | 1.03 | 4,396,394 | 435,000 | 9.89 |
| 올 림 픽 운 영 과 | 11,196,275 | 2.38 | 11,160,575 | 35,700 | 0.32 |
| 올 림 픽 시 설 과 | 43,497,541 | 9.24 | 43,525,541 | △28,000 | △0.06 |
| 보 건 의 료 원 | 14,349,919 | 3.05 | 13,489,471 | 860,448 | 6.38 |
| 농 업 기 술 센 터 | 49,347,323 | 10.48 | 48,100,811 | 1,246,512 | 2.59 |
| 의 회 사 무 과 | 774,871 | 0.16 | 774,871 | 0 | 0.0 |
| 상하수도사업소 | 9,711,218 | 2.06 | 9,796,667 | △85,449 | △0.87 |
| 읍 면 | 5,917,471 | 1.26 | 5,938,071 | △20,600 | △0.35 |

○ 성질별 세출예산은

-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168,019천원이 감액된 45,995,776천원
- 물건비는 1,106,498천원이 증액된 30,744,994원
- 경상이전은 378,186천원이 감액된 104,307,447천원
- 자본지출은 2,757,945천원이 증액된 261,911,769천원
- 내부거래는 400,767천원이 감액된 16,880,765천원
- 예비비및기타는 1,232,308천원이 증액된 8,501,284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성질별 현황》

(단위:천원)

| 구 분 | 3회추경예산안 | | 기정액 | 비교증감 | |
|---------|-------------|--------|-------------|-----------|-------|
| | 예산액 | % | | 증감액 | % |
| 합 계 | 470,912,035 | 100.00 | 466,762,256 | 4,149,779 | 0.89 |
| 인 건 비 | 45,995,776 | 9.77 | 46,163,795 | △168,019 | △0.36 |
| 물 건 비 | 30,744,994 | 6.53 | 29,638,496 | 1,106,498 | 3.73 |
| 경 상 이 전 | 104,307,447 | 22.15 | 104,685,633 | △378,186 | △0.36 |
| 자 본 지 출 | 261,911,769 | 55.62 | 259,153,824 | 2,757,945 | 1.06 |
| 보 전 재 원 | 2,570,000 | 0.55 | 2,570,000 | 0 | 0.0 |
| 내 부 거 래 | 16,880,765 | 3.58 | 17,281,532 | △400,767 | △2.32 |
| 예비비및기타 | 8,501,284 | 1.81 | 7,268,976 | 1,232,308 | 16.95 |

다. 특별회계

-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381,72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4,858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 공기업특별회계는 21,991,69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50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22,390,02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0,357천원이 증액 되었음.

《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천원)

| 구 분 | 3회추경예산안 | | 기정액 | 비교증감 | |
|-----------------|------------|--------|------------|----------|-------|
| | 예산액 | % | | 증감액 | % |
| 특 별 회 계 | 44,381,725 | 100.00 | 43,986,867 | 394,858 | 0.90 |
| 공기업특별회계 | 21,991,697 | 49.55 | 21,957,196 | 34,501 | 0.16 |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 21,991,697 | 49.55 | 21,957,196 | 34,501 | 0.16 |
| 기타특별회계 | 22,390,028 | 50.45 | 22,029,671 | 360,357 | 1.64 |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741,162 | 1.67 | 741,162 | 0 | 0.0 |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 1,833,000 | 4.13 | 1,173,000 | 660,000 | 56.27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609,134 | 1.37 | 608,415 | 719 | 0.12 |
|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 963,685 | 2.17 | 963,685 | 0 | 0.0 |
| 수질개선특별회계 | 17,937,103 | 40.42 | 18,237,465 | △300,362 | △1.65 |
| 주택사업특별회계 | 305,944 | 0.69 | 305,944 | 0 | 0.0 |

라. 계속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계속비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23개 사업임.

(단위:백만원)

| 연번 | 사 업 명 | 총사업비 | 2015까지 | 2016년 | 2017년 | 2018년이후 |
|----|-----------------------|---------|---------|--------|--------|---------|
| 합계 | 23개사업 | 340,954 | 112,031 | 74,833 | 88,334 | 65,756 |
| 1 |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 1,718 | 700 | 263 | 300 | 455 |
| 2 |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 7,808 | 4,400 | 2,218 | 1,190 | 0 |
| 3 |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조성 | 8,800 | 4,200 | 876 | 3,724 | 0 |
| 4 | 평창송어종합 공연체험장건립 | 9,105 | 1,250 | 4,030 | 3,825 | 0 |
| 5 |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 | 3,740 | 0 | 640 | 400 | 2,700 |
| 6 | 광천선굴어드벤처 테마파크조성 | 6,510 | 0 | 0 | 710 | 5,800 |
| 7 | 대관령공공도서관 건립 | 2,000 | 0 | 250 | 997 | 753 |
| 8 |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 | 16,182 | 4,181 | 2,338 | 2,850 | 6,813 |
| 9 | 홍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32,700 | 9,098 | 3,600 | 800 | 19,202 |
| 10 |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 7,500 | 0 | 900 | 1,200 | 5,400 |
| 11 | 횡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12,776 | 2,000 | 5,000 | 5,776 | 0 |
| 12 | 중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9,887 | 1,567 | 3,000 | 2,500 | 2,820 |
| 13 |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2,209 | | 314 | 357 | 1,538 |
| 14 | 평창읍 중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 | 6,580 | 0 | 0 | 680 | 5,900 |
| 15 |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 55,718 | 9,109 | 9,790 | 36,819 | 0 |
| 16 | 평창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 10,539 | 0 | 2,377 | 5,527 | 2,635 |
| 17 | 창리천 우수 확보 및 생태하천복원 | 9,558 | 3,256 | 3,200 | 3,102 | 0 |
| 18 |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 34,300 | 27,585 | 2,709 | 2,113 | 1,893 |
| 19 | 평창동계올림픽급수체계 구축 | 60,872 | 30,420 | 21,480 | 8,972 | 0 |
| 20 | 방림(계촌)농어촌생활용수개발 | 11,000 | 1,520 | 357 | 3,021 | 6,102 |
| 21 | 평창동계올림픽관련하수도확충 | 23,527 | 12,465 | 11,062 | 0 | 0 |
| 22 |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 4,000 | 280 | 429 | 3,291 | 0 |
| 23 | 방림4(구포동)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3,925 | 0 | 0 | 180 | 3,745 |

마. 명시이월사업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136개 세부사업으로 일반회계 127개 사업 특별회계 9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58,642,759천원 임.

(단위:천원)

| 회계별 | 건수 | 예산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비고 |
|------|-----|-------------|------------|------------|---------|----|
| 합 계 | 136 | 100,569,705 | 41,580,649 | 58,642,759 | 346,297 | |
| 일반회계 | 127 | 89,244,210 | 33,242,026 | 55,672,367 | 329,817 | |
| 특별회계 | 9 | 11,325,495 | 8,338,623 | 2,970,392 | 16,480 | |

바. 주요사업현황(1억원 이상)

(단위:천원)

| 소관부서 | 사 업 명 | 예산액 | 비고 |
|---------|----------------------|-----------|----|
| 합 계 | 16개사업 | 5,461,663 | |
| 주민생활지원과 | ○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개보수 | 838,200 | 보조 |
| 자치행정과 | ○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 500,000 | 자체 |
| 경제체육과 | ○ 동계올림픽 거점시장 지원사업 | 100,000 | 자체 |
| | ○ 봉평전통시장 테마거리조성사업 | 195,000 | 보조 |
| 안전건설과 | ○ 도로유지관리 임차료 | 350,000 | 자체 |
| | ○ 제설용 자재구입 | 250,000 | 자체 |
| | ○ 옷대화 농산물반출도로 확포장 사업 | 600,000 | 자체 |
| 도시주택과 | ○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 150,000 | 자체 |
| 올림픽추진단 | ○ 동계올림픽 관련 피복비 | 175,000 | 자체 |
| | ○ 올림픽 룩 사이니지 설치 | 135,000 | 보조 |
| 올림픽시설과 | ○ 게이트웨이지구 전선지중화 정산금 | 300,463 | 보조 |
| 보건사업과 | ○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지원 | 847,000 | 보조 |
| 농축산과 | ○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 | 600,000 | 보조 |
| | ○ 기업형 새농촌 선도마을 지원 | 200,000 | 보조 |
| | ○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101,000 | 보조 |
| 상하수도사업소 | ○ 신설급수공사비 | 120,000 | 자체 |

IV. 검토결과

1. 예산안 총규모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5,29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4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470,91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50백만원(0.89%)
- 특별회계는 44,38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5백만원(0.90%)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150백만원이 증액된 470,912백만원임.
- 지방세수입은 2,426백만원이 증액된 30,690백만원
- 세외수입은 1,516백만원이 감액된 17,114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850백만원이 증액된 234,397백만원으로 특별교부세 2건 85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3건 400백만원이 증액되어 7,16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493백만원이 증액된 156,43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753백만원이 증액된 118,885백만원, 시·도비보조금은 740백만원이 증액된 37,54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497백만원이 증액된 25,118백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 49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150백만원이 증액된 470,912백만원임.
- 정책사업은 기정예산대비 4,007백만원이 증액된 396,847백만원
- 재무활동은 185백만원이 증액된 23,099백만원
- 행정운영경비는 42백만원이 감액된 50,96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예산은

국토및지역개발분야 93,470백만원(19.85%)

문화및관광분야 77,769백만원(16.51%)

농림해양수산분야 71,545백만원(15.19%)

사회복지분야 55,705백만원(11.83%) 순으로 배분되었음.

○ 조직별 세출예산은

안전건설과 58,445백만원(12.41%)

문화관광과 55,409백만원(11.77%)

자치행정과 53,669백만원(11.40%)

주민생활지원과 51,138백만원(10.86%) 순으로 배분되었음.

○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61,912백만원(55.62%)

경상이전비 104,307백만원(22.15%)

인건비 45,996백만원(9.77%)

물건비 30,745백만원(6.53%) 순으로 배분되었음.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7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38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5백만원이 증액된 21,99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1,833백만원으로 660백만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609백만원으로 71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00백만원이 감액된 17,93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5. 종합검토의견

□ 세입예산안

-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4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된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이 감소되어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확보분 8억원을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분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보조금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15억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출예산안

-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4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책사업비 44억원, 재무활동비 1억원이 편성되었음. 이중, 정책사업을 보면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 및 변경내시분 18억원을 반영하고, 총액 증감없이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대부분임.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26억원을 편성하였음.
- 본예산 및 1회, 2회추경에 예산편성 후 3회추경 예산안에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27개사업 1억3천만원으로 다양한 사유가 있겠으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이 요구됨.

《표1》 전액(100%) 삭감사업 현황

(단위:천원)

| 소관부서 | 사업명 | 삭감예산액 | 비고 |
|-------------|--------------------------------|---------|------|
| 합계 | 27개 사업 | 131,020 | |
| 기획 감사실 | ○진부비행장 이전 감정평가수수료 | 20,000 | 본예산 |
| | ○정부3.0 추진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 시상금 | 2,000 | 본예산 |
| | ○SNS 서포터즈 원고료 | 3,600 | 본예산 |
| 문화 관광과 |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 6,552 | 1회추경 |
| |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 7,598 | 1회추경 |
| | ○평창아라리 체험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 3,796 | 1회추경 |
| | ○평창아라리 체험관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 4,554 | 1회추경 |
| | ○테마축제 육성 지원 공공요금 및 제세 | 6,000 | 본예산 |
| | ○테마축제 육성 지원 시설장비유지비 | 1,200 | 본예산 |
| | ○관광기반시설 벤치마킹 등 지원 | 5,000 | 본예산 |
| | ○마하생태관광지 망실도난 및 미회수금 보전금 | 1,000 | 본예산 |
| 주민생활 지원과 |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지원 | 500 | 본예산 |
| | ○청소년 수련 및 문화활동 지원 | 550 | 본예산 |
| | ○청소년 지도자 대회 지원 | 1,200 | 본예산 |
| | ○휴일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지원 | 3,000 | 본예산 |
| | ○휴일보육 어린이집 운영지원 | 3,000 | 본예산 |
| | ○다문화가정 교육 및 행사참가 지원 | 1,000 | 본예산 |
| |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2,970 | 2회추경 |
| | ○행정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 보상 | 500 | 본예산 |
| 자치 행정과 |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운영 | 10,000 | 본예산 |
| | ○정보화 능력 우수공무원 시상금 | 1,000 | 본예산 |
| | ○을지연습 우수부서 시상금 | 2,000 | 본예산 |
| 환경위생과 |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빈병화수 거부 소매점 신고 포상금 | 3,000 | 본예산 |
| 산림과 | ○산림치유지도사(2급)과정 교육지원 | 10,000 | 본예산 |
| 올림픽추진단 | ○경기응원 서포터즈 지원 | 5,000 | 본예산 |
| 올림픽운영과 | ○K-FOOD 플라자 부지 임차료 | 20,000 | 1회추경 |
| 기술지원과 | ○비닐하우스 구조심사 | 6,000 | 본예산 |

※ 예산의결일 : 본예산(2016.12.20), 1회추경(2017. 5.19), 2회추경(2017. 9.15)

□ 명시이월사업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비로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136건에 586억원이며,
- 사유별로 보면
절대공기 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연 등 임.
- 명시이월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자의 적정성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2》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 부 서 별 | 건수 | 3회추경안 | 명시이월액 | 비율(%) | 비고 |
|-----------|-----|---------|--------|-------|--------|
| 합 계 | 136 | 515,294 | 58,643 | 11.5% | |
| 기 획 감 사 실 | 0 | 10,587 | 0 | 0.0 | |
| 문 화 관 광 과 | 22 | 55,409 | 10,955 | 19.8 | |
| 주민생활지원과 | 4 | 51,879 | 1,910 | 3.7 | |
| 중 합 민 원 과 | 3 | 2,125 | 87 | 4.1 | |
| 자 치 행 정 과 | 5 | 53,669 | 1,587 | 3.0 | |
| 재 무 과 | 1 | 5,731 | 109 | 1.9 | |
| 경 제 체 육 과 | 11 | 20,608 | 3,128 | 15.2 | 특별회계포함 |
| 환 경 위 생 과 | 8 | 40,320 | 3,810 | 9.4 | 특별회계포함 |
| 산 림 과 | 2 | 12,360 | 214 | 1.7 | |
| 안 전 건 설 과 | 26 | 58,445 | 10,220 | 17.5 | |
| 도 시 주 택 과 | 9 | 42,543 | 7,603 | 17.9 | |
| 올림픽추진단 | 6 | 4,831 | 1,170 | 24.2 | |
| 올림픽운영과 | 8 | 11,196 | 5,483 | 49.0 | |
| 올림픽시설과 | 6 | 43,498 | 2,144 | 4.9 | |
| 보 건 의 료 원 | 2 | 14,350 | 2,331 | 16.2 | |
| 농업기술센터 | 15 | 49,347 | 5,379 | 10.9 | |
| 의 회 사 무 과 | 0 | 775 | 0 | 0.0 | |
| 상하수도사업소 | 8 | 31,703 | 2,513 | 7.9 | 특별회계포함 |
| 읍 · 면 | 0 | 5,918 | 0 | 0.0 | |

※ 2016년도 명시이월 확정액 : 136건/ 551억원(결산서 첨부서류 P445)

이 밖에 본 추경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속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V.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8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